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18년 3월 20일

국 무 총 리 이 낙 연

국 무 위 원
행정안전부
장

김 부 겸

●대통령령 제28706호

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)”을 “(화재경계지구의 관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법 제13조제3항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법 제13조제5항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시·도지사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1.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
2. 소방특별조사의 결과
3. 소방설비의 설치 명령 현황
4. 소방교육의 실시 현황
5. 소방훈련의 실시 현황
6. 그 밖에 화재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사항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화재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화재 발생 시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 화재경계지구 제도를 정비하고, 시·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화재경계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·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소방기본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 화재예방 및 화재경계에 필요한 자료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